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1996. 11.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기획실(3개담당관 포함)신설 및 4개계신설에 따른 관련부서의 기구를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
- 부산광역시 사무중 토양환경보전 업무가 각 자치구로 위임됨으로써 그 소관부서를 지정하며
- 동세무업무를 구분청(세무과, 징수과)으로, 건축물 대장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조및제3조 : 기획실 신설
(하부조직 :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 제6조 제2항 : 사회복지과 사무중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 제6조 제4항 : 환경보호과 사무중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신설
- 제7조 제6항 : 지적과 사무중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신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0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을 “기획실,”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3.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4. 예산편성 및 배정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6.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7. 통계업무
8. 행정관리 개선
9. 지시사항 총괄
10.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11.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타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재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2. 지출원 업무

3.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4. 국·공유재산 관리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④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예술진흥시책 수립

2. 향토문화 발굴육성

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4. 국정·시정·구정시책 계몽선전 및 보도

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7. 사회단체 등록

8.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9. 문화재 보호관리

“제4조 및 제4조의 1”을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 “재무과”를 삭제하고, “징수과”다음에 “민원봉사과”를 삽입한다.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

2.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공인관리

4. 민원사무제도 개선연구

5.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고충상담

7. 어렵고 불우한 주민상담 협조업무처리

8. 행정전산화 추진업무 및 전산 시설유지보수

9. 전산교육 및 전산실운영관리
10. 주민등록전산시스템관리 지도감독 및 운영
11. 전산보안업무

제6조 제2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같은조 제3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같은조 제4항중 제6호내지 제9호를 제7호내지 제10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제6항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제1항중 “실.과”를 “담당관, 과”로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 규칙등 개정) 부산광역시하구조례, 규칙, 훈령, 예규중 이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1.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재무과"는 "재무담당관실"로, "재무과장"은 "재무담당관"으로 한다.
3.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4.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과"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u>	제2조(실.국의 설치) ----- ----- <u>기획실, 총무국,</u> ----- ----- -----.
제3조(기획감사실) <u>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같다.</u>	제3조(기획실) ① <u>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u> ② <u>기획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1. -----
2.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2. -----
3.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3. -----
4. 예산편성 및 배정	4. -----
5.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5. -----
6.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6. -----
7. 통계업무	7. -----
8. 행정관리 개선	8. -----
9. 지시사항 총괄	9. -----
10.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10. -----
11.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1. -----
12.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2. -----
13.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	13. -----
14. 그밖에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 -----

현행	개정 (안)
(신설) ③	재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신설) 2.	지출원 업무
(신설) 3.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신설) 4.	국, 공유재산관리
(신설)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신설) ④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지역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신설) 2.	향토문화 발굴육성
(신설) 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신설) 4.	국정, 시정, 구정시책 계몽선전 및 보도
(신설) 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신설)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설) 7.	사회단체등록
(신설) 8.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신설) 9.	문화재보호관리
제4조(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 지역문화 예술진흥 시책수립	(삭제)
2. 향토문화 발굴육성	(삭제)
3.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삭제)
4. 국정, 시정, 구정시책 계몽선전 및 보도	(삭제)
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삭제)

현행	개정 (안)
6.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삭제)
7. 사회단체 등록	(삭제)
8.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삭제)
9. 문화재 보호관리	(삭제)
제4조의 1(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	(삭제)
2.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	(삭제)
3. 문서 및 공인관리	(삭제)
4. 민원사무제도 개선연구	(삭제)
5.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삭제)
6. 주민의 고충상담	(삭제)
7. 어렵고 불우한 주민상담 협조업무 처리	(삭제)
8. 행정전산화 추진업무 및 전산시설 유지보수	(삭제)
9. 전산교육 및 전산실 운영관리	(삭제)
10. 주민등록전산시스템관리 지도감독 및 운영	(삭제)
11. 전산보완 업무	(삭제)
제5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둔다.	제5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현행	개정 (안)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u> 2. <u>지출원 업무</u> 3. <u>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u> 4. <u>국·공유재산관리</u> 5. <u>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③ ----- --- 1. ~ 7. (현행과 같음)
⑤ 징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④ ----- -----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⑤ <u>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u>
(신설) 1. <u>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u>	(신설) 2. <u>호적및국적에 관한 사항</u>
(신설) 2. <u>호적및국적에 관한 사항</u>	(신설) 3. <u>문서 및 공인관리</u>
(신설) 3. <u>문서 및 공인관리</u>	(신설) 4. <u>민원사무제도 개선연구</u>
(신설) 4. <u>민원사무제도 개선연구</u>	(신설) 5. <u>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u>
(신설) 5. <u>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u>	(신설) 6. <u>주민의 고충상담</u>
(신설) 6. <u>주민의 고충상담</u>	(신설) 7. <u>어렵고 불우한 주민상담 협조업무 처리</u>
(신설) 7. <u>어렵고 불우한 주민상담 협조업무 처리</u>	(신설) 8. <u>행정전산화 추진업무 및 전산시설 유지보수</u>
(신설) 8. <u>행정전산화 추진업무 및 전산시설 유지보수</u>	(신설) 9. <u>전산교육 및 전산실 운영관리</u>
(신설) 9. <u>전산교육 및 전산실 운영관리</u>	

현행	개정 (안)
(신설)	10.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관리지도 감독 및 운영
(신설)	11. 전산보완 업무
제6조(사회산업국) ①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제6조(사회산업국) ① ----- ----- ----- -----.
②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② ----- -----.
6.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 (신설)	6. -----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 -----
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
6. 보장구제조, 수리업의 행정처분 (삭제)	6. -----
7. 묘지·화장장관리	7. -----
8.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④ ----- -----
④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 -----
5.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6.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7. ----- -----
6.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 -----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종합계획수립 조정	9. ----- -----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